일본의 자산운용행위 관련법의 고찰 (1)
–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

정보신청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과 관련한 업자로는 인가투자고문업자, 투자신탁위탁업자로 투자신탁(위탁업)과 투자법인(운용업) 운용신탁회사, 신탁회사, 상품투자고문업자 등이 관련된다.

이들의 운용대상 자산으로는 유가증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산 일반, 상품투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자산운용업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인가,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는 경우는 인가투자고문업자, 투자신탁위탁업자가 해당되고, 면허를 받는 경우는 운용신탁회사와 신탁회사를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상품투자고문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과 관련법은 금융상품거래법,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신탁업법, 보험업법 상품투자에 관련한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자산운용과 관련한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신탁업법, 상품투자에 관련한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본다.

Ⅰ. 서 론

동법은 1951년(쇼와 26년) 6월 4일 법률 제198호로 제정되어, 최종 개정은 2007년(평성19년) 3월 30일 법률 제6호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5개편과 부칙으로 총25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총칙으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편은 투자신탁제도로 3개의 장 57개 조문(제3조~제60조), 제3편은 투자법인제도로 3개의 장 162개 조문(제61조~제

223조, 제4편 잡칙 5개의 조문(제223조의 2~제227조) 마지막 제5편 벌칙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요한 내용의 일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총 칙

1. 목 적

동 법률은, 투자신탁 또는 투자법인을 이용해 투자자 이외의 자가 투자자의 자금을 주 자금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로 집합 · 운용하여,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이것들을 이용한 자금의 운용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함과 함께, 이 제도에 근거해 발행되는 각종의 증권의 구입자 등의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규정

제2조에서는 동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먼저,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이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1]에 근거해 주로 유가증권, 부동산 그 외의 자산으로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정령에 정한 것(이하 「특정자산」이라 함)에 대한 투자를 하여 운용[2]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동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한편, 그 수익권을 분할해 복수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이란 한 개의 신탁 약관에 근거해, 수탁자가 복수의 위탁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신탁 계약에 의해 인수한 금전을, 합동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동 법률에 근거해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적격 기관투자가 사모(適格 機關投資家私募)」란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취득 신청의 권유 가운데, 적격 기관투자가[3]만을 상대방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일반 투자가사모」란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취득 신청의 권유 가운데, 공모 또는 적격 기관투자가사모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투자구」란 균등의 비율적 단위로 세

1)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시를 포함한다.

2)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용과 관련되는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의한 운용을 포함한다.

3) 금융상품 거래법 제2조 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적격 기관투자가를 말한다.

분화된 투자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말한다.

여섯째, 「자산운용회사」란 등록 투자 법인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운용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금융상품 거래업자를 말한다.

일곱째, 「자산보관회사」란 등록 투자 법인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Ⅲ. 투자신탁제도

1.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

(1)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 계약의 당사자는 금융상품 거래업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구성된다. 위탁자인 금융상품 거래업자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투자신탁 계약과 관련되는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4]을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상품 거래업자는 체결하는 투자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증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에게 해당 투자신탁 계약과 관련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 거래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명서에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수익자의 보호에 부족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2) 수익증권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 수익증권의 발행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6]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명식으로 한다(동조 제4항). 나아가, 동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기명

4) 위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즉, ① 위탁자 및 수탁자의 상호 또는 명칭, ② 수익자에 관한 사항, ③ 위탁자 및 수탁자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신탁의 원본의 액에 관한 사항, ⑤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⑥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자산의 종류를 포함), ⑦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방법, 기준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 ⑧ 신탁의 원본의 상환 및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⑨ 신탁 계약기간, 그 연장 및 신탁 계약기간중의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신탁의 계산 기간에 관한 사항, ⑪ 수탁자 및 위탁자가 받는 신탁보수 그 외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및 그 지불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⑫ 공모, 적격 기관투자가 사모 또는 일반 투자가 사모의 구별, ⑬ 수탁자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차입금의 한도액에 관한 사항, ⑭ 위탁자가 운용의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자가 그 운용의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을 위탁하는 사람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소재의 장소, ⑮ 전 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탁과 관련되는 비용 기타 투자신탁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위탁자에 있어서의 공고 방법, 전 각 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 제외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5) 해당 수익증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식의 수익증권이라고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수익증권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의결권 등의 지시 행사

투자신탁 재산으로 인하여 가진 유가증권과 관련한 의결권 및 회사법상의 주주의 권리 등의 행사는 투자신탁 위탁회사가 그 지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나아가, 투자신탁 재산으로 인하여 가지는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이 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법 제310조 제5항[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2항).

(4) 특정자산의 가격 등의 조사

투자신탁 위탁회사는, 운용의 지시를 하는 투자신탁 재산에 대해 특정 자산[8]의 취득 또는 양도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해당 투자신탁 위탁회사, 그 이해관계인 등[9] 및 수탁회사 이외의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자산의 가격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제11조 제1항). 위의 경우 조사하는 자산이 부동산(토지 혹은 건물 또는 이것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함)일 때는,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감정 평가를 근거로 해 조사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5) 반대수익자의 수익권 매입 청구

서면에 의한 결의로 중대한 약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해, 자기가 가지는 수익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해당 수익권과 관련되는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서면에 의한 결의에 의한 중대한 약관의 변경 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서면에 의한 결의일, ② 투자신탁 약관의 변경 또는 위탁자 지도형 투자신탁의 병합의 내용 및 이유, ③ 수익자가 전자적 방법에

6)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해당 수익증권의 번호, 위탁자의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란 ① 위탁자 및 수탁자의 상호 또는 명칭, ② 수익권의 수, ③ 투자신탁 계약 체결 당초의 신탁의 원본의 액 및 수익권의 총수, ④ 신탁 계약기간, ⑤ 신탁의 원본의 상환 및 수익의 분배의 시기 및 장소 ⑥ 수탁자 및 위탁자가 받는 신탁보수 기타 수수료의 계산방법 및 그 지불의 방법 및 시기, ⑦ 공모, 적격 기관투자가사모 또는 일반 투자가사모의 구별, ⑧ 원본의 추가 신탁을 할 수가 있는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추가 신탁을 할 수가 있는 원본의 한도액, ⑨ 위탁자가 운용의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자가 그 운용의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을 위탁하는 사람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소재의 장소, ⑩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탁과 관련되는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나아가, 기명식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무기명식으로 할 수가 있다(동조 제5항).

7)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8) 금융상품 거래법 제2조 제16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유가증권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9) 해당 투자신탁 위탁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 외의 해당 투자신탁 위탁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취지, ④ 위 3가지를 제외하고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투자신탁 위탁회사의 책임

투자신탁 위탁회사(해당 투자신탁 위탁회사로부터 그 운용의 지시와 관련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을 받은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가 그 임무를 해태함에 따라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그 투자신탁 위탁회사는, 해당 수익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1조).

2.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

(1)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신탁회사 등이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투자신탁 계약과 관련되는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 약관(이하 「투자신탁 약관」이라고 함)의 내용[10]을 내각총리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9조).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신탁 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11]에 관계없이,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에 대해, 원본에 손실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 이것을 보전하거나 또는 미리 일정액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제47조 제2항). 하지만, 신탁회사 등이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제48조).

(2) 수익증권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대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50조 제1항). 즉 동 수익증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12] 및 해당 수익증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10) 동 약관에는 ① 수탁자의 상호 또는 명칭, ② 합동으로 운용하는 신탁의 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 ③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④ 위탁자 및 그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⑤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방법, 기준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 ⑦신탁의 원본의 상환 및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⑧ 해당 투자신탁 약관에 근거하는 투자신탁계약과 관련되는 투자신탁 재산의 합동 운용에 관한 사항, ⑨ 전 호에 규정하는 투자신탁 재산과 다른 신탁재산과의 분별 운용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신탁 계약기간, 그 연장 및 신탁 계약기간중의 해약에 관한 사항, 신탁의 계산 기간에 관한 사항, 신탁보수 그 외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및 그 지불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6조(손실의 보충 등을 행하는 취지의 신탁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제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심탁업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는 금전신탁에 한하여 원본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사전에 일정액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란 ① 수익자의 상호 또는 명칭, ② 권면금액 및 이에 상당하는 수 , ③ 합동하여 운용하는 원본의 총액 및 이에 상당하는 수, ④ 신탁계약기간, ⑤ 신탁의 원본의 상환 및 수익의 분배시기 및 장소, ⑥ 신탁보수 기타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더불어 그 지불 방법 및 시기, ⑦ 공모, 적격기관투자가사모 또는 일반투자가사모의 구별, ⑧ 합동하여 운용하는 신탁의

수탁자의 대표자가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에 의해,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되는 투자신탁 계약의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6조 제2항[13]의 규정은,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의 위탁자의 권리의 행사에 대해 준용한다(제51조).

(3) 신탁회사 등의 책임

신탁회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용을 실시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그 신탁회사 등은 해당 수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56조).

3. 외국투자신탁

외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발행자는, 해당 수익증권의 모집 취급 등[14]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해당 외국 투자신탁과 관련되는 일정 사항[15]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위의 신고는 해당 외국 투자신탁의 신탁 약관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동조 제2항). 기타 외국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변경 등의 신청 등(제59조),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모집 취급 등의 금지 또는 정지 명령(제60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Ⅳ. 투자법인제도

1. 투자법인

(1) 통 칙

투자법인은 법인으로 하고(제61조), 그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62조). 동 법인은 자산의 운용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가 없으며,[16]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두거나 사용인을 고용할 수가 없다(제63조). 또한 투자법인은 그 명칭을 상호로 하여야 하며, 그 상호 중에는 반드시 투자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원본의 총액을 증가시키는 위탁자 비지도형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원본의 총액의 한도액, ⑨ 수탁자가 운용에 관련한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수탁자가 그 운용에 관련한 권한을 위탁하는 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소재의 장소, ⑩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에 관련한 비용, ⑪ 전호 각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이외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3) "위탁자 지도형 투자신탁이 분할된 수익권이 양도 및 행사는 기명식 수익증권에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14) 그 내용 등을 감안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지장을 일으키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5) ① 위탁자(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에 비슷하는 것의 경우에 한정), 수탁자 및 수익자에 관한 사항, ②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③ 신탁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⑤ 전 각 호에 게재된 것을 제외하고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6) 투자법인이 그 사업으로 하는 행위 및 그 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라고 한다(제63조의 2).

한다.[17] 만약 위의 규정에 위반한 명칭 또는 상호의 사용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투자 법인은,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나아가,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사업 또는 영업을 실시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투자 법인은, 해당 투자 법인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오인한 해당 타인과 거래를 한 자에 대해, 해당 타인과 연대하여 해당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64조).

(2) 설 립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기획인이 규약을 작성[18]하고 그 전원이 이에 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설립기획인의 자격은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① 설립하려고 하는 투자법인이 주로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특정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운용의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업자[19], ② 전호에 게재된 자 이외 타인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받는다(제66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제98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게재된 자도 설립기획인이 될 수 없다. 투자법인의 성립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제74조).

(3) 규약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등

투자법인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① 목적, ② 상호, ③ 투자주의 청구에 의한 투자구(投資口)의 환불을 하는 취지[20] 또는 하지 않는 취지, ④ 투자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투자구의 총구수(總口數), ⑤ 설립에 즈음하여 출자되는 금전액, ⑥ 투자법인이 상시 보관 유지하는 최저한도의 순자산액, ⑦ 자산운용의 대상 및 방침, ⑧ 자산평가의 방법 기준 및 기준일, ⑨ 금전의 분배 방침, ⑩ 결산기, ⑪ 본점소재지, ⑫ 집행임원, 감독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보수액 또는 보수 지불에 관한 기준, ⑬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보수의 액수 또는 자산운용 보수의 지불에 관한 기준, ⑭ 기타 5가지(제14호에서 제18호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67조).

(4) 성립시의 출자총액

투자법인의 성립시의 출자총액은, 설립시 발행 투자구(투자 법인의 설립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투자구를 말함)의 불입금액(설립시 발행 투

17) 반면 투자법인이 아닌 회사는 투자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19) ① 해당 특정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택지건물 거래업법 제3조 제1항의 면허 및 동법 제510조의 2 제1항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업자, ② 해당 특정 자산에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거래업자를 들 수 있다.

20) 이 경우 환불을 정지하는 취지를 아울러 정할 수도 있다.

자구 1구와 교환하여 불입하는 금전액을 말함)의 총액으로 한다. 위의 출자총액은 1억엔 이상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액을 하회할 수는 없다(제68조).

(5) 기 타

기타 설립과 관련되는 신고 등(제69조), 설립기획인은 투자법인을 위하여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설립기획인의 의무(제70조), 설립시 모집 투자구에 관한 사항의 결정(제70조의 2), 설립시 모집 투자구의 신청 등(제71조), 설립시 집행임원 등의 선임(제72조), 설립시 집행 임원 등에 의한 조사 등(제73조), 회사법의 준용(제75조).

2. 투자구 및 투자증권

(1) 발행하는 투자구

투자법인이 발행하는 투자구는 무액면으로 한다(제76조). 투자주는 그가 가지는 투자구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제77조 제1항). 반면 투자주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즉, ① 금전의 분배를 받을 권리, ②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③ 투자주총회에 있어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투자주명부 등

투자법인은, 투자주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동법에서 정한 사항 및 발행하는 모든 투자구의 총구수를 기재 또는 기록을 하여야 한다. 동법에서 정한 사항이란 ① 투자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전 호의 투자주가 가지는 투자구의 구수, ③ 제1호의 투자주가 투자구를 취득한 날, ④ 제2호의 투자구와 관련되는 투자증권의 번호를 말한다(제77조의 3 제1항). 또한 투자법인은 일정한 날, 즉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에 있어 투자주명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투자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투자구의 양도

투자주는 그가 가지는 투자구를 양도할 수 있다. 투자법인은 투자구의 양도에 대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 이외 다른 제한을 둘 수 없다. 또한 투자구의 양도는 해당 투자구와 관련되는 투자증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투자증권의 발행 전에 행한 투자구의 양도는 투자법인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78조).

이처럼 양도한 투자구의 양도는 그 투자구를 취득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투자주명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투자법인에 대항할 수 없다. 즉, 투자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 양도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증권의 점유자는 해당 투자증권과 관련되는 투자구에 대한 권리를 적접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79조).

(4) 기 타

이 외에도 투자구의 병합과 분할(제81조의 2

와 3, 4), 투자주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이익의 공여(제77조의 2), 자기의 투자구의 취득 및 채권자의 금지(제80조), 친법인 투자구의 취득 금지(제81조), 모집 투자구의 모집 사항의 결정 등(제82조), 모집 투자구의 신청 등(제83조), 회사법의 준용(제84조), 투자증권의 발행 등(제85조), 투자증권의 불발행(제86조), 투자증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등(제87조), 한 주 미만의 단주처리(제88조)를 규정하고 있다.

3. 기 관

(1) 투자주총회

1) 투자주총회의 권한

투자주총회는 동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 및 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 임원, 임원회 그 외의 투자주총회 이외의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제89조).

2) 투자주총회의 소집

투자주총회의 소집은 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임원이 한다. 또한 감독임원도 집행 임원에 대하여 투자주총회의 목적인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제시하여 투자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가 있다(제90조).

집행임원은 투자주총회를 소집하려면 투자주총회의 날의 2월 전까지 해당일을 공고하고, 해당일의 2주일 전까지, 투자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21]에 의한 통지를 발표하여야 한다.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투자주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1조).

이처럼 투자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임원은 투자주총회를 소집과 관련하여, ① 투자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② 투자주총회의 목적인 사항, ③ 투자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투자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할 때는 그 취지, ④ 전호에 게재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90조의 2 제1항).[22]

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의결권 행사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내각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해당 기재를 한 의결권 행사 서면을 투자법인에 제출하여 실시한다(제92조 제1항). 동 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투자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2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도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2) 투자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투자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제901조 제2항).

(동조 제2항). 또한 투자 법인은, 투자주총회의 날로부터 3월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결권 행사 서면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투자주는 투자법인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결권 행사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동조 제4항).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도 있다(제92조의 2).

4) 기 타

기타 규정으로 간주 찬성(제93조), 투자주총회의 결의(제94조), 회사법의 준용(제94조) 규정이 있다.

(2) 투자주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투자법인은 투자주총회 이외의 기관으로 ① 1명 또는 2명 이상의 집행임원, ② 집행임원의 원수에 1명을 더한 수 이상의 감독임원 ③임원회(役員會), ④ 회계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제95조).

(3)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1) 선 임

임원(집행 임원 및 감독 임원) 및 회계감사인은 투자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제96조). 이렇게 선임된 임원 등은 투자법인과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7조). 집행임원 내지 감독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동법 제98조와 제100조에는 집행임원 내지 감독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게재한 자는 집행 임원 내지 감독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선임된 집행임원은 임기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99조), 감독 임원의 경우는 4년을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다만, 감독 임원의 경우 규약 또는 투자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단서). 이 외에 회계감사인의 자격과 임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제102조 내지 제103조).

2) 해 임

임원 및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투자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임된 자는 그 해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법인에 대하여 해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04조).

또한 회계감사인은 임원회 또는 청산인회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해임될 수 있다. 즉, 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한 때, ② 회계감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비행을 발견되었을 때, ③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를 견디지 못할 때에는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임된 자가 있는 경우 임원회가 선정한 감독 임원 또는 청산인회가 선

정한 청산 감독인은 그 취지 및 해임의 이유를 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투자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05조).

3) 기 타

이 외에도 임원의 해임의 투자주총회의 결의(제106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107조), 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제108조)의 규정이 있다.

(4) 집행 임원 및 감독 임원

이에는 집행 임원과 감독 임원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규정(제109조), 업무의 집행에 관한 검사인의 선임 규정(제110조), 감독 임원은 집행 임원의 직무 감독에 관한 규정(제111조)을 두고 있다.

(5) 임원회

1)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모든 집행 임원 및 감독 임원으로 구성된다(제112조). 임원회의 소집은 먼저, 집행 임원이 1인인 경우는 그 집행 임원이, 집행 임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각 집행 임원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 임원이 두 명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임원회를 소집하는 집행 임원을 규약 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집행 임원이 소집한다(제113조 제1항). 임원회의 목적인 사항을 나타내 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3항). 임원회의 소집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청구일부터 2주간 이내의 날을 임원회의 날로 하는 임원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집행 임원 또는 감독 임원은, 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동조 제4항).

2) 임원회의 권한 등

임원회는 동 법률 및 규약에서 정하는 권한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집행임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임원회는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다. 위의 해임사유로는 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한 때, ② 집행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비행을 행한 때, ③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를 들고 있다(제114조 제1항 · 2항).[23]

(6) 회계감사인

1)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회계감사인은, 제7절(계산 등) 및 제12절(청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감사한다.[24] 이 경우 회계감사인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15조의 2 제1항). 회계감사인은 그 직무

2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 임원을 해임한 것 그 외의 사유(집행 임원의 임기의 만료 및 사임을 제외)에 의해 집행 임원이 빠졌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 임원은 공동으로 집행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투자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제114조 제3항).

24) 다음의 서류란 ① 1 투자 법인의 계산서류(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계산서류, 제115조의 7 제2항 제1호에서도 마찬가지임),

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 법인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감독 임원 등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보고

회계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집행 임원 또는 청산 집행인의 직무의 집행에 관계되어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감독 임원 또는 청산 감독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 임원 및 청산 감독인은 그 직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계감사인에 대해 그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다(제115조의 3).

3) 투자주총회에 있어서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

투자주총회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계감사인은 투자주총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집행 임원, 감독 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투자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 책임은 총 투자주의 동의가 없는 한 면제될 수 없다. 나아가, 임원 등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15조의 제7, 8 및 제116조).

4. 사무의 위탁

(1) 사무의 위탁

투자 법인은, 그 자산의 운용 및 보관과 관련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무에 있어서 다음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게재한 것이란 ① 발행하는 투자구 및 투자법인채권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에 관한 사무, ② 투자주명부 및 투자 법인채원부의 작성 및 비치된 기타 투자주명부 및 법인채원부에 관한 사무, ③ 투자 증권 및 투자 법인 채권(이하 「투자 증권 등」이라고 함)의 발행에 관한 사무, ④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⑤ 계산에 관한 사무, ⑥ 전 각 호에 게재된 것 이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말한다(제117조).

(2) 사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의무

투자 법인으로부터 전조 각 호에 게재된 사무의 위탁을 받은 일반 사무 수탁자는, 해당 투자 법인을 위해 충실히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18조).

(3) 일반 사무 수탁자의 책임

일반 사무 수탁자는,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투자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 사무 수탁자가 투자 법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자산운용 보고 및 금전의 분배와 관련되는 계산서 및 이러한 부속 명세서, ② 청산 투자 법인의 재산목록 등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목록 등) 및 결산보고를 말한다.

집행 임원, 감독 임원, 청산 집행인, 청산 감독인 또는 회계감사인도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때는, 그 일반 사무 수탁자, 집행 임원, 감독 임원, 청산 집행인, 청산 감독인 및 회계감사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투자구의 환불 및 회계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투자구의 환불은 제6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환불 청구(제124조), 환불(제125조), 위법한 환불에 대한 책임(제126조의 2), 투자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등(제126조의 3), 위법으로 환불을 받는 자의 책임(제127조)이다.

회계 등에 대하여는 제7절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제1관으로 법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는 회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관 제1목은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제128조의 2), 회계장부의 열람 등의 청구(제128조의 3), 회계장부의 제출 명령(제128조의 4)을 규정하고 있다. 제2목은 계산서류 등(제129조~제133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관에는 잉여금 등(제135조~제136조), 제4관 금전의 분배 등(제137조~제13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투자법인채권

(1) 투자법인채권의 발행

투자주의 청구에 의해 투자구의 환불을 하지 않는 취지의 규약의 규정이 있는 투자 법인은, 규약으로 정한 액을 한도로 하여 투자법인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투자법인과 합동하여 투자법인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다(제139조의 2).

(2) 모집 투자법인채권에 관한 사항의 결정

투자 법인은, 그가 발행하는 투자법인채권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그때마다, 모집 투자법인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게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즉, ① 모집 투자법인채권의 총액, ② 각 모집 투자법인채권의 금액, ③ 모집 투자법인채권의 이율, ④ 모집 투자 법인채의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⑤ 이자 지불의 방법 및 기한, ⑥ 투자법인채권을 발행할 때는 그 취지, ⑦ 투자법인채권과 관련되는 채권자가 제139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회사법 제698조의 규정[25]에 의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할 때는 그 취지, ⑧ 투자법인채권 관리자가 투자법인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제139조의 9 제4항 제2호에 게재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할 때는 그 취지, ⑨ 모집 투자 법인채의 할당을 받는 자를 정해야 할 기한, ⑩ 전호의 기

25) 동 규정은 기명식과 무기명식 사이의 전환에 대한 규정이다. 즉, "사채권이 발행된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676조 제7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정함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 기명식 회사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또는 그 무기명식 사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까지 모집 투자 법인채의 총액에 대해 할당을 받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그 잔액을 인수하는 것을 약속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이름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39조의 3).

(3) 모집투자 법인채의 신청

투자 법인은, 전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해 모집 투자 법인채의 인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제13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39조의 4 제1항). 이러한 인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동조 제2항에 기재된 서면을 투자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물론 통지 방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동조 제3항). 나아가, 위의 통지는 그 통지가 통상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7항).

(4) 모집투자 법인채의 할당

투자법인은, 신청자 중에서 모집 투자 법인채권의 할당을 받는 자를 정하는 한편, 그 자에게 할당하는 모집 투자 법인채권의 금액 및 금액마다의 수를 정하지 않권의 금액마다의 수를, 전조 제2항 제2호의 수보다 감소할 수가 있다. 나아가, 투자 법인은 제139조의 3 제1항 제12호의 기일의 전날까지, 신청자에 대해, 해당 신청자에게 할당하는 모집 투자 법인채의 금액 및 금액마다의 수를 통지해야 한다(제139조의 5).

(5) 기 타

이 외에도 모집투자 법인채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제139조의 6), 회사법의 준용(제139조의 7), 투자법인채권 관리자의 설치(제139조의 8), 투자법인채권 관리자의 권한 등(제139조의 9), 투자법인 채권자집회(제139조의 10), 담보부사채 신탁법 등의 적용관계(제139조의 11), 단기투자 법인채와 관련되는 특례(제139조의 12), 단기투자 법인채의 발행(제139조의 13)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규약의 변경, 해산 및 합병

먼저, 제9절 규약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규약의 변경(제140조), 투자구의 지불에 관련한 규약의 변경(제141조), 최저 순자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의 변경(제142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둘째, 제10절 해산과 관련해서는 해산사유(제143조), 해산한 투자법인의 합병의 제한(제143조의 2), 투자법인의 해산의 소(제143조의 3), 회사법의 준용(제144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셋째, 제11절 합병과 관련해서는 제1관 통칙과 관련하여 합병계약의 체결(제145조), 합병을 위한 환불 정지(제146조)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2관 흡수합병과 관련해서는 흡수합병계약(제147조), 흡수합병의 효력의 발생 등(제147조의 2)이 있고, 제3관은 신설합병과 관련하여 신설합병 계약(제148조), 신설합병의 효력의 발생 등(제148조의 2)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4관에서는 흡수합병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

람 등(제149조), 흡수합병 계약의 승인 등(제149조의 2),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합병 소멸법인에 대하여 반대투자주의 투자구 매입청구(제149조의 3),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합병 소멸회사의 채권자의 이의 제기(제149조의 4), 흡수합병의 효력 발생일의 변경(제149조의 5), 흡수합병에서 흡수합병 존속법인의 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제149조의 6), 흡수합병 존속법인의 계약의 승인 등(제149조의 7),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합병 존속법인에 대한 반대 투자주의 투자구 매입청구(제148조의 8), 흡수합병 존속법인의 경우 채권자 이의제기(제149조의 9), 흡수합병 존속법인의 경우 흡수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제149조의 10)의 규정이 있다. 이 외에도 제5관 신설합병의 절차에 대한 규정 및 제12절 청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

8. 투자법인의 업무

(1) 등 록

1) 등록의 신청

투자 법인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자산 운용으로 제19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제187조).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 법인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① 제6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지, 제6호 내지 제10호까지, 제2호, 제1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 본점소재지, ② 집행 임원, 감독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자산운용사의 성명과 주소, ④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자산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개요, ⑤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주소, ⑥ 투자기업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 사유에 대한 정책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 ⑦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더불어 동 신청서의 제출시 다음의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집행 임원이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설립 집행 임원 후보자와 다를 경우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자산 운용 회사와 체결한 자산 운용에 관한 위탁 계약서 사본, ④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87조 내지 제188조).

2) 등록의 실시

내각총리대신은 전조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등록연원일과 등록번호를 투자법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위의 등록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 신청을 한 투자 법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내각총리대신은 투자법인 등록부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89조).

3) 등록 거부

내각총리대신은 등록 신청을 한 투자 법인이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한다. 즉, ① 불법의 목적에 따라 제193조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②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제19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설립기획자로 하고 있을 때, ③ 제9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 임원으로 또는 제10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하고 있을 때 ④ 공인회계사와 감사법인 이외의 자 또는 제10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하고 있을 때, ⑤ 금융상품 거래업자가 아닌 자 또는 제20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거래업자 자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다.

4) 기 타

변경신고(제191조), 해산신고 등(제192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업 무

1) 업무의 범위

자산운용의 범위(제193조), 자산운용의 제한(194조 내지 제195조), 투자 법인이 발행하는 투자 증권 등의 모집 등(제196조), 투자증권의 모집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거래법의 준용 등(제197조)의 규정이 있다.

2) 업무 위탁

등록 투자 법인은 자산운용회사에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위의 업무 위탁계약은 투자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제198조).

3) 자산운용사

자산 운용 회사는 금융상품 거래업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이어야 한다. 즉, ① 등록투자기업이 투자 대상으로 하는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조 제1항[26]의 면허를 받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업자, ② 등록투자법인이 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택지건물거래업법 제50조의 2(거래 일임 대리 등에 관련한 특례) 제1항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업자이어야 한다(제199조).

26)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조(면허)에는 "택지건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는 둘 이상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역 내 사무소(본점, 지점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를 두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 때는 국토교통대신의,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만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도도부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 계속하여 택지건물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기 타

이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에게 위탁의 금지(제200조), 특정 자산의 가격 등 조사(제201조), 투자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권한의 재위탁 등(제202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법인 등에 대한 서면 교부(제203조),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제204조), 자산운용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해지(제205조), 투자법인으로 자산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해지(제206조 내지 제207조), 자산 보관회사의 자산 보관에 관한 업무의위탁 등(제208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제209조), 자산의 분리 보관(제209조의 2),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제210조)를 규정하고 있다.

(3) 감 독

1)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투자법인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211조 제1항). 또한 자산보관회사도 투자법인과 마찬가지이다(동조 제2항). 이외에도 등록투자법인은 영업기간에 대해 내각부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보고 양식을 작성하고 매 영업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2조).

2) 기 타

이 이외에도 입회검사 등(제213조), 업무개선명령(제214조), 통보 등(제215조), 등록의 취소(제216조), 등록의 말소(제217조), 감독 처분의 공고(제218조), 투자증권 등의 모집 취급 등 금지 또는 정지명령(제219조)의 규정이 있다.

9. 외국투자법인

(1) 외국투자법인의 신고

외국투자법인 또는 그 설립기획인에 상당한 자는 당해 외국투자법인이 발행하는 투자 증권 또는 투자법인채권에 유사한 증권의 모집 취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외국투자법인에 관한 다음에 규정된 사항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에 규정된 사항이란 ① 목적, 상호 및 주소, ②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④ 계산 및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 ⑤ 외국투자증권이 표시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 ⑥ 외국투자증권의 상환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220조).

2) 외국투자법인의 변경 신고

외국투자법인은 제220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 타

이 외에도 외국투자법인의 해산 신고(제222조), 오국투자증권의 모집 취급 등의 금지 또는 정지 명령(제223조)을 규정하고 있다.

Ⅴ. 잡 칙

동장의 잡칙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승인 조건(제223조의 2), 금융상품 거래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제223조의 3), 재무자관에 자료 제출 등(제24조), 협의 등(제224조의 2조), 권한의 위임 등(제225조),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225조의 2), 실시규정(제226조), 경과조치(제227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 벌 칙

벌칙에 관한 규정은 제228조부터 제252조에 있다.

고 재 종

(외국법제조사위원, 선문대 법대 교수)